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37</td> </tr> </table>	의안 번호	37	제안년월일 : 1998.7.16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개월로 한다. II. 제안경위 1. 운영위원회 조상훈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2.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98.7.16)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 III. 제안이유 여성 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 여성문제를 단일 창구로 일원화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유형 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 및 부녀복지시설 확충 등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확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37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38</td> </tr> </table>	의안 번호	38	제안년월일 : 1998.7.16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I. 주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발전과 관련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 II. 제안경위 1. 운영위원회 조상훈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2.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98.7.16)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는 것임. III. 제안이유
의안 번호	3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39</td> </tr> </table>	의안 번호	39	제안년월일 : 1998.7.16 제 안 자 : 운영위원장	I. 주문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증진에 관한 정책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위원수는 1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6
의안 번호	39			